

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광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09. 3.

발 의 자 : 박광석·권기만·길윤옥
김상조·김익수·박교상
박순이·임춘구·장세만
전인철·정근수(11인)

1. 제 안 이 유

-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,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의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내 용

-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, 학교정화구역, 버스정류소, 택시 승강장 등의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, 시민의 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며 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관내에서 발행되는 언론매체(잡지·신문·방송 등)에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으며, 문화·체육 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하게 할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, 금연활동사업과 금연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, 제8조

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담배흡연자(이하 “흡연자”라 한다)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실천의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 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금연”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.
2. “금연권장구역”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, 시민자율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조례의 범위) 이 조례의 범위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구미시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.

제4조(금연권장구역의 지정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.

1. 도시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)
2. 학교정화구역(「학교보건법」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말한다)
3.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
4. 그 밖에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제5조(금연교육 및 홍보지원)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민들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담배 광고 및 후원 금지)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·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.

②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·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공청회 등) 시장은 주민에게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시장은 금연 및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(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)를 위촉하여 금연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예산지원 등) 시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)

[illegible]